

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7일 김포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10일
다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13일
라. 의결일자 : 2004년 12월 14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, 재활,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
-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설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분열병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대상입무 명시(안 제4조)
-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 및 의무(안 제5,6조)
- 자문위원회의 설치·구성방법·기능·수당지급 근거(안 제9,10,11,12,13조)
-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중식비 등 본인에게 징수 가능(안 제18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지역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내에 두어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며 사회복귀에 대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
- 이를 전문자격 소지자에게 위탁운영 하게 함으로서 김포시민의 정신보건 행정을 꾸밀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제5조 제3항의 위·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관리,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의 간결화를 위해 제4조 “정신보건센터”를 “센터”로 제5조 4항 “정신보건센터”를 “센터”로 제9조 “김포시센터 자문위원회”를 “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”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겠음.

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